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이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를 30~60인으로 조정하고, 기후재정, 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반영 사항,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70조제3호 및 제72조제3항).

II. 검토의견

1. 시행일 관련(부칙 안 제1조)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
되, 제2조제12호의2, 제3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제2조제5호, 제8조 등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개정안은 2025년 12월 18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대
안가결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 체계·자구 심사일 전에 이미 일부 시행일이 도과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규정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한 수정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
이 제시함.

개정안 부칙	수정의견(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2026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u>1. 제2조제12호의2, 제3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u> <u>2. 제47조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2일</u> <u>3. 제2조제5호, 제8조, 제16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6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u>	제1조(시행일) ----- <u>공포한 날</u> <u>부터</u> -----. ----- -----. <u><삭 제></u> <u>1.</u> ----- <u>2.</u> ----- ----- ----- -----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

2. 국립기후과학원 설립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부칙 안 제3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국립기후과학원의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여 안 제36조의2에 따라 국립기후과학원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사무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¹⁾는 정부가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관으로, 안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고시·행정처분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과조치를 통한 사무 이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관 사무는 국립기후과학원이 승계하되, 종전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행위는 국립기후과학원이 행하거나 행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에 관한 수정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 부칙	수정의견(안)
제3조(국립기후과학원 사무 이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국립기후과학원의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종합정보센터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센터의 소관 사무는 과학원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행위는 과학원이 행하거나 과학원에 행한 것으로 본다.

3. 온실가스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부칙 안 제5조)

안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와 제28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온실가스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온실가스의 범위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점검 등 이 법에 따른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관리업체²⁾에 대한 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에서 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하기 위한 것인바,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정의하여 개정안에 따른 경우 안 제2조제5호에 따라 삼불화질소(NF3)가 온실가스에 포함됨에도 경과조치를 통해 제외됨으로써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관리업체 대상에서 삼불화질소(NF3) 배출 업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온실가스에서 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수정·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방법, 비공개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공개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u>온실가스</u> 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현행과 같음)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 ----- <u>온실가스</u> <u>[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부 칙 >	< 부 칙 >
	<u>제5조(온실가스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와 제28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u>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조제1호 중 “온실가스”를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는 제외한다]”로 한다.</u>

(전문위원 이 세 진)